

●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-28호

국유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통지 공시송달

국유재산법제38조(원상회복), 제71조(변상금) 및 제72조(변상금의징수)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반환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1일

서울지방우정청장

1. 처분대상

업체명	대표자	최종주소
(주)라이브포스트	오승*	서울시 중구 명동2길 3*, 9층

2. 처분사유

휴게음식점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1(혜화동 111-3) 서울혜화동우체국 1층 21.6㎡를 사용허가 승인받아 사용하던 중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국유재산의 원상회복 및 반환이 이행되지 않음

3. 처분사항

가. 국유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

o 국유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일 : 2019. 3.31. 까지

나. 변상금 부과(사용허가 취소일부터 ~ 원상회복 후 반환일 까지)

4. 법적근거 : 국유재산법 제38조(원상회복)

5. 공고기간 : 2019. 2. 21. ~ 2019. 3. 7.(15일간)

6. 유의사항

가.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

나.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(☎ 02-6967-9222, FAX 050-5005-11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